

2026. 사학기관 경영평가 실시 계획(안)

2026. 6.

차 례

I. 목적	1
II. 근거	1
III. 추진경과	2
IV. 기본방침	3
V. 추진계획	3
1. 평가대상 및 시기	3
2. 평가영역 및 항목	3
3. 평가방법 및 요령	7
4. 평가결과 활용	9
VI. 향후계획	10
VII. 행정사항	10

2026. 사학기관 경영평가 실시 계획(안)

 학교지원과(사학지원담당)

I 목적

- 사학기관의 책무성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투명성 확보
- 경남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학교법인의 능동적 참여 유도
- 사학기관 주기적 경영진단 및 평가·환류를 통하여 사학 운영의 개선과 자구 노력 유도

II 추진 근거

□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4조
 -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사립학교법」 제48조
 -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9조
 -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 학교평가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정량평가와 필요한 경우 정성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2026 경남교육」: 2-3-3 건전하고 투명한 사학기관 운영 지원

III 추진경과

□ (2009. 8. 31.) 사학기관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

□ (2010.~2024.) 사학기관 경영평가 격년 실시 및 평점 결과

구분	2010년도	2012년도	2014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20년도	2022년도	2024년도
중학교 이하 유지법인	99.3 /150점 (24개)	103.8 /150점 (24개)	105 /150점 (24개)	98.5 /150점 (24개)	101.6 /150점 (24개)	103.6 /150점 (24개)	130/ 200점 (26개)	144.8 /200점 (26개)	145.6 /200점 (26개)
고등학교 이하 유지법인	99.6 /150점 (63개)	100.5 /150점 (63개)	101.6 /150점 (63개)	92.8 /150점 (63개)	93.8 /150점 (64개)	99.3 /150점 (64개)	129 /200점 (64개)	138.8 /200점 (64개)	140.9 /200점 (63개)

□ 2026년도 사학기관 경영평가 지표 정비

- (2024. 11. 18.) 2026. 사학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선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 2024. 사학기관 경영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안 마련
 - 타 시·도 현황과 비교 분석
 - 경남교육 정책 및 역점사업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
 - 부서별 지표 제안 및 자체 지표 검토
- (2024. 11. 20.) 2026.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지표 개선 의견 제출
(경남 도내 90개 법인 대상)
- (2024. 11. 21.) 사학기관 경영평가 지표 제안 및 개선의견 제출 협조(도교육청 전 부서)
- (2025. 2. 25.) 2026. 사학기관 경영평가 지표(안) 사전 안내

IV 기본방침

- 사학기관의 책무성 및 건전성 측정
- 항목별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객관성 확보
- 평가 결과에 따라 행·재정적 차등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V 추진계획

1. 평가대상 및 시기

가. 평가대상: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90개)

- 중학교 이하 유지경영 법인: 26개
- 고등학교 이하 유지경영 법인: 64개

※ 타 시도 법인(5), 대학이하 유지법인(2), 사회복지법인(2) 등 9개 법인은 제외

나. 평가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다. 평가주기: 격년

라. 평가기간: 2024. 3. 1. ~ 2026. 2. 28.(2년)

마. 평가시기: 2026. 6월 ~ 8월 (※ 평가 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영역 및 항목

가. 평가영역: 3개 분야, 24개 평가지표

2024년
3개 분야, 24개 지표
① 법인 운영의 책무성(80점)
② 학교 운영의 민주성(100점)
③ 회계 운영의 건전성(20점)

⇒

2026년
3개 분야, 25개 지표
① 법인 운영의 책무성(80점)
② 학교 운영의 민주성(100점)
③ 회계 운영의 건전성(20점)

나. 평가항목

평가 분야	평가지표	배점
1. 법인 운영의 책임성(80점)	1. 법정부담금의 법인부담 실적	10점
	2. 법정부담금 부담액 증가 실적	5점
	3. 법정부담금 부담액 전출 비율	5점
	4.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 대비 확보 실적	5점
	5. 수익용 기본재산의 증자 실적	5점
	6.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성 제고 실적	10점
	7. 임원 보충의 적정성	8점
	8. 법인 임원(이사, 감사) 연수 실적	7점
	9. 법인 관련 의무공개 사항 이행 노력	15점
	10. 학교법인 정관의 정비 노력	10점
2. 학교 운영의 민주성(100점)	1. 청렴도 향상 노력 및 교육실적	5점
	2.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운영	10점
	3.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	10점
	4. 교직원 상피제를 통한 공정성 확보 노력	5점
	5.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교권 보호 노력	10점
	6. 교장(감) 임용의 적정성	10점
	7. 정규교사 신규 채용의 투명성 및 적정성	10점
	8. 기간제 교사 채용 비율의 적정성	10점
	9.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 운영의 민주성	5점
	10. 사무직원 채용의 공정성	5점
	11.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노력	20점
3. 회계 운영의 건전성(20점)	1. 법인회계 예산 및 결산의 적정성	5점
	2. 학교회계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	5점
	3. 예산편성 절차 이행 노력	5점
	4.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실적	5점
3개	25개	200점

다. 주요 변경 사항

□ 지표 변경(2024년 → 2026년)

2024년
1-1. 법정부담금의 법인부담 실적
1-2. 법정부담금 부담액 증가 실적
1-3. 법정부담금 부담액 전출 비율
1-4.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 대비 확보 실적
1-5. 수익용 기본재산의 증자 실적
1-6.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성 제고 실적
1-7. 임원 보충의 적정성
1-8. 법인 관련 의무공개 사항 이행 노력
1-9. 학교법인 정관의 정비 노력
2-1. 청렴도 향상 노력 및 교육실적
2-2.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운영
2-3.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
2-4. 교직원 상피제를 통한 공정성 확보 노력
2-5.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교권 보호 노력
2-6. 교장(감) 임용의 적정성
2-7. 정규교사 신규 채용의 투명성 및 적정성
2-8. 기간제 교사 채용 비율의 적정성
2-9.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 운영의 민주성
2-10. 사무직원 채용의 공정성
2-11.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노력
3-1. 법인회계 예산 및 결산의 적정성
3-2. 학교회계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
3-3. 예산편성 절차 이행 노력
3-4.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실적
24개



2026년
1-1. 법정부담금의 법인부담 실적 수정
1-2. 법정부담금 부담액 증가 실적
1-3. 법정부담금 부담액 전출 비율 수정
1-4.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 대비 확보 실적
1-5. 수익용 기본재산의 증자 실적
1-6.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성 제고 실적
1-7. 임원 보충의 적정성 수정
1-8. 법인 임원(이사, 감사) 연수 실적 신규
1-9. 법인 관련 의무공개 사항 이행 노력
1-10. 학교법인 정관의 정비 노력
2-1. 청렴도 향상 노력 및 교육실적 수정
2-2.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운영 수정
2-3.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 수정
2-4. 교직원 상피제를 통한 공정성 확보 노력
2-5.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교권 보호 노력 수정
2-6. 교장(감) 임용의 적정성
2-7. 정규교사 신규 채용의 투명성 및 적정성 수정
2-8. 기간제 교사 채용 비율의 적정성
2-9.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 운영의 민주성
2-10. 사무직원 채용의 공정성 수정
2-11.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노력 수정
3-1. 법인회계 예산 및 결산의 적정성
3-2. 학교회계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
3-3. 예산편성 절차 이행 노력
3-4.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실적
25개

가점	1. 사학기관 경영 우수 사례(※ 정성평가)
	2. 사무직원 과원 해소 실적
	3. 교직원 장애인 고용률
감점	1. 4대 비위와 갑질로 인한 언론보도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민원 발생 시(건당 △30점)
	2. 관할청의 행정처분 및 교직원 징계처분 불이행 1) 기관주의 건당△5점, 기관경고 건당 △10점 2) 경징계: 건당△5점 3) 중징계: 건당 △10점
	3. 업무처리지침 위반 1) 배치기준을 위반한 사무행정원 운용 등(-5점) 2) 정관 보고 기일 미준수(-3점)
	4. 사무직원 인사관리의 적정성(과원 인원당 △3점)



가점	1. 사학기관 경영 우수 사례(※ 정성평가)
	2. 사무직원 과원 해소 실적
	3. 교직원 장애인 고용률
감점	4. 사학기관 경영 홍보 실적 신규
	1. 4대 비위와 갑질로 인한 언론보도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민원 발생 시(건당△30점)
	2. 관할청의 행정처분 및 교직원 징계처분 불이행
	3. 업무처리지침 위반
	4. 사무직원 인사관리의 적정성(과원 인원당 △3점)
신규	5. 사무직원 범죄 사실 미신고 및 은폐(건당 최대 △15점) 신규 1) 사무직원이 학교(법인)에 범죄사실 미신고 또는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미보고(△10점) 2)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징계 결과 미보고 또는 처분 후 7일 이내 보고기한 미준수(△5점)

□ 주요 변경 내용

① 평가지표 확대: 3개 분야 24개 ⇨ 3개 분야 **25개**

② 가·가점 확대: 가점 3개 ⇨ **가점 4개** / 감점 4개 ⇨ **감점 5개로 확대**

③ 신규 평가지표 신설

▶ 법인 임원(이사, 감사) 연수 실적

- 전 임원의 역할 연수 신설로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자구적 노력 유도

▶ (가점) 사학기관 경영 홍보 실적

- 학교·법인의 주요사업 관리와 성과,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법인의 능동적 참여 및 학교 경쟁력 강화 유도

▶ (감점) 사무직원 범죄 사실 미신고 및 은폐

- 사무직원의 범죄사실 미신고 및 징계결과, 처분 등 은폐 사실 사전 차단으로 교직원 책임성 강화

④ 수정·보완 평가지표

가.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책무성 강화 및 구성원의 책무성 제고 노력 유도를 위한 평가 척도 개선

▶ 1-1, 1-3 (법정부담금): 법정부담금 평가 항목 급간 점수 조정 및 배점 축소

- 법인의 불가피한 채무 구조로 매년 하위 평가점수를 받는 법인과 수익성이 높은 기본재산을 보유한 법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법정부담금 실제 납부 현황을 반영한 급간 조정으로 평가 적정성 확보

▶ 1-8 (임원): 임원 취임 규정 미준수에 대한 평가 척도 구체화 및 감점 점수 상향 조정

- 임원 결원으로 이사회 기능 수행 및 학교 운영 지장 초래에 따른 법인 책무성 강화

나. (학교 운영의 민주성) 민주적 학교 운영의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평가 척도 구체화

▶ 2-1(청렴도 향상) 청렴정책 추진 점검 실적지표 신설 및 청렴교육 연수 실적을 전 교직원으로 확대

- 청렴도 향상 실효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평가 척도 변경 및 평가 방법 구체화
- ▶ **2-2, 2-3(교육공동체 운영):** 교육공동체(학부모회, 학생회) 예산편성 및 집행률 지표 신설 및 급간 조정
 -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평가 척도 변경 및 평가 방법 구체화
- ▶ **2-5(교권 보호):**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구성 및 운영 실적 지표 신설
 -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구성 및 운영 지표 신설
- ▶ **2-7(교사 채용)**
 - 정규교사 신규채용의 1차(필기) 위탁 및 1차·2차(실기, 수업실연, 심층면접) 점수 반영을 통한 채용의 투명성·공정성 강구 방안 확보
- ▶ **2-10(사무직원 채용):** 임용결과보고 기일 미준수 추가
- ▶ **2-11(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설문 결과 반영 시 인정 기준(교직원 참여율 일정비율 이상) 추가
 - 평가 결과의 신뢰도 제고 및 구성원 참여 유도를 위해 설문 결과에 설문 참여율 기준 제시

라. 평가기준: 『2026. 사학기관 경영평가 편람』 참조

3. 평가방법 및 요령

가. 2026. 사학기관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26. 사학기관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평가의 신뢰성 제고
 - 위원은 사학업무 및 평가업무 유경험자로 위촉
 - 평가 지표별 평가 기준 및 평가척도에 따라 정량(서면)과 정성 병행 평가
- 현장 방문을 통한 평가점수 산출로 평가자료 검증 및 객관성 확보

나. 평가 절차

(※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사학기관 경영평가 안내	공 문 안 내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자 료 제 출	1차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		2차 현장 평가 ※ 평가위원회	결 과 안 내	최종 평점 및 평가 결과 공개
【교육청】 ↓ 【학교법인】	⇒	【학교법인】 ↓ 【교육청】	⇒	정량 및 정성평가 【교육청】	⇒	자료 검증이 필요할 경우 현장 방문 【교육청】	⇒	【교육청】 ↓ 【학교법인】
2026. 6월 중		2026. 7월 초		2026. 7월~8월 말				2026. 9월 말

다. 평가방법

□ 서면평가(1차)

- 사학기관 경영평가 자체 평가 보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평가
-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 현장평가(2차)

-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실시

□ 최종평점

-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 점수를 종합
- 중학교 이하 및 고등학교 이하 유지경영 학교법인을 통합하여 평가 점수에 따라 1 ~ 5등급의 비율로 평가

※ 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해당 분야 평가점수 "0점" 처리

<평가 결과 등급별 비율>

구분	1등급 (우수법인)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최하위법인)	합계
비율	5%	25%	40%	25%	5%	100%
법인수	5	23	36	22	4	90개

4. 평가 결과 활용

가. 평가등급 공개로 기관의 책무성 제고

나. 인센티브

□ 우수 법인(1등급) 지원

구분	내용	비고
우수 법인	· 포상금 지급(최대 5백만원, 2027학년도 1회 지급) - 1등급 법인 5개 (법인운영비로 5백만원 지급) - 2등급 법인 점수 높은 순위 10개 (법인운영비로 2백만원 지급) · 법인필요경비 한도액 확대 (최대 30%, 2027학년도 · 2028학년도 2년간 적용) - 1등급 법인 5개 (30%) - 2024년 사학기관 경영평가 대비 순위상승이 큰 순 법인 10개 (25%) · 학교법인(학교) 공개 및 교육감 표창(우수법인상) 수여 · 2회 연속 1등급 법인*은 차기 사학기관 경영평가 제외 가능 · 정책, 공모사업 지원 가점 부여 ·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 시 우선 순위 가점 부여 · 연수(해외 등) 대상자 선발 시 우대 · 직원 표창 선발 시 우대 · 사무직원 성과상여금 가점 부여	사학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순위 상승 법인 결정

* 창신기독교학원(창신고): 2022년 · 2024년 모두 1등급으로서 2026년 경영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페널티

□ 최하위 등급 법인(5등급)

구분	내용	비고
최하위 등급 법인	· 컨설팅을 통해 교육경쟁력 강화 유도 · 필요시 해당 영역에 대한 감사 요구 및 행정 지도 · 사무직원 성과상여금 감점 부여 · 교육청 각종 공모사업 및 부서별 사업비 대상 선정 시 감점 부여 · 최하위 기관 직원에 대한 표창 및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시 배제	

□ 평가 불성실 법인

- 평가 미참여 및 허위 자료 제출 등이 있는 법인은 최하위 기관 처리 및 기관경고 조치

VI 향후 계획

1. 2026. 사학기관 경영평가 실시계획 안내: 2026. 6.
2. 2026. 사학기관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 2026. 7.
3. (학교법인) 2026. 사학기관 경영평가 자체보고서 제출: 2026. 6. ~ 7.
4.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2026. 7. ~ 8.
5. 평가보고서 작성: 2026. 8. ~ 9.
6. 평가결과 확정 및 공개: 2026. 9.

VII 행정 사항

□ 학교법인 2026. 사학기관 경영평가 결과표 및 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2026. 7. 7.(화)까지
- 제출서류
 - ① 공문에 파일로 첨부 제출: 2026. 사학기관 경영평가 자체 평가 결과표(엑셀) 1부
 - ② 제본: 법인 자체평가 보고서(증빙자료철 등) 1부